

NYS OTDA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
지정대리인의 권리와 책임

지정대리인이란 무엇입니까?

지정대리인은 귀하가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State Supplement Program, "SSP")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전을 관리하고, SSP 요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입니다.

지정대리인을 두는 것은 완전히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단, SSP 수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에 의해서 법적 무능력자로 선언되고,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있는 성인인 경우, 또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이 확립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3가지 경우에는 지정대리인인 지급수령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귀하가 연방 보장 소득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수당과 SSP 수당 모두를 수령하고, 귀하의 연방 수당에 대해 대리인인 지급수령자가 있는 경우, 귀하의 대리인인 지급수령자는 SSP 수당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귀하의 대리인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변경은 오로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SP를 위한 지정대리인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뉴욕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인은 어떻게 임명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정대리인을 임명 또는 변경하거나, 지정대리인이 귀하를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지정대리인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오로지 SSP 수당만을 받는 수령자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 SSI 수당을 수령하는 수령자를 위한 대리인 변경은 반드시 사회보장국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누가 저의 SSP 수당에 대한 지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귀하의 지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18세 미만인 경우, 지정대리인은 반드시 보호자인 부모이거나 법률상 후견인이어야 합니다.
- 귀하가 성인이고, 법원에 의해서 법적 무능력자로 선언된 경우, 귀하의 지정대리인은 반드시 법원이 임명한 후견인이어야 합니다.

지정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다음 범죄 중 하나에 대해 중범죄 영장을 발부받은 개인: 구금으로부터의 탈출 행위, 기소를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 구금, 그리고 도주-탈출 행위
- 유죄 판결을 받은 중죄인
- 형사적으로 지급수령자 관련 사기죄가 인정된 개인
- SSP 수당의 부정 사용 전력이 있는 개인
- 수령자의 채권자
- 해당 개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미처리된 중범죄(해당 범죄가 중범죄로 정해지지 않은 관할 지역에서는, 사형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영장이 발부된 개인

귀하는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은 구체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귀하의 지정대리인이 귀하를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수령자: 지급수령자 권한을 부여받은 지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합니다.

- 수령자를 대신해서 SSP 수당을 수령하고, 관리합니다.
- 수령된 SSP 수당 및 지출된 자금에 관한 회계 기록을 작성 및 관리하고,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회계 기록을 수령자 또는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에 제공합니다.
- 수령된 자금을 전적으로 수령자의 필요사항을 위해서 수령자를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 수령자에게 발송된 모든 통지서와 서식을 수령합니다.
- 사안과 수당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사안 변경이 해당 정보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수령자를 위해서 변경 사항을 보고합니다.
- 공정 심리(Fair Hearing)에서 수령자를 대리합니다.

SSP 수당의 지급

귀하가 자발적으로 귀하의 지정대리인이 귀하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선택한 경우, 귀하는 반드시 SSP 수당에 대한 직접 예치 서식(Direct Deposit form) 또한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은 이 서식에서 제공된 정보에 기초해서 은행 계좌로 예치될 것입니다. 귀하가 수탁자 계좌 또는 귀하의 지정대리인과의 공동 계좌 중 하나를 설정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SSP 수령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이 명령한 후견인이 있는 성인인 경우, 부모 또는 법률상 후견인이 반드시 직접 예치 서식 또한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가 SSI 및 SSP 수당 모두를 수령하고 있고, 이미 사회보장국에 의해 임명된 대리인인 지급수령자를 두고 있는 경우, 귀하의 SSP 수당은 귀하의 대리인인 지급수령자에 의해서 설정된 계좌로 계속 예치될 것입니다.

지정대리인인 지급수령자의 책임:

- 모든 SSP 수당을 수령자의 현재 필요사항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현재 필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령자의 장래 필요사항을 위해서 저축합니다.
- 월간 SSP 수당 중 개인필요수당(Personal Needs Allowance) 부분은 집단적 보호시설(congregate care)에 거주하는 동안 수령자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 지정대리인이 잘못 사용하거나 초과해서 지급되게 야기한 수당을 상환합니다.
- SSP 수령 자격 및 지급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SSP 수령자가 그에 대한 권리가 없는 수당의 반환에 대한 변경사항/사유를 보고합니다.
- 회계적 목적을 위해서 요청을 받는 경우, SSP 수령자의 소득, 또는 해당되는 경우에 그 수령자의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합니다.

2. 공정 심리 대리인: 공정 심리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합니다.

- 공정 심리에서 수령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수령자에게 발송된 모든 통지서와 서식을 수령합니다.
- 수령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나 문서 자료가 없다면, 사안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변경 사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수령자의 사안과 수당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보 전용 대리인:** 오로지 정보에 관한 권한만 부여받은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합니다.

- 수령자에게 발송된 모든 통지서와 서식을 수령합니다.
- 수령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나 문서 자료가 없다면, 사안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변경 사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수령자의 사안과 수당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정대리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불문하고, 다음 경우에는 SSP에 통지하기로 동의합니다.

- SSP 수령자가 사망하는 경우
- SSP 수령자가 그 동거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 SSP 수령자가 더 이상 지정대리인의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지정대리인이 더 이상 지정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지정대리인이 우편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지정대리인은 **지정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란 제목의 항목에서 위에 열거된 이유 중 하나로 인해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정대리인은 수령자의 자격 및 지급에 대한 주기적인 재결정 업무를 돕기로 동의합니다.

지정대리인은 재결정 업무에 있어서 SSP를 돕기 위한 증거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의사항이 있거나, 귀하의 지정대리인 또는 그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십니까? 전화번호 1-855-488-0541로 전화하시거나, 우리 기관의 웹사이트 www.otda.ny.gov/program/ssp를 방문하세요.